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17962 |
|----------|-------|

발의연월일 : 2026. 3. 31.

발 의 자 : 유용원 · 안철수 · 강선영
김소희 · 이인선 · 김 건
김미애 · 성일종 · 박충권
송언석 · 이달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을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군무원은 국군에 소속되어 국군의 임무 수행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장기 근무한 군무원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으로 규정되어있지 않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2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군무원은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군무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 제4호마목 신설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4호의2 중 “제1항제4호라 목의”를 “제1항제1호거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마 목의”로 한다.

거. 군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군 무원으로 정년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마. 군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타목 및 과목에”를 “타목, 과목 및 거목에”로, “제4호라목에”를 “제4호라목 및 마목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무원의 국립묘지 안장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거목
및 같은 항 제4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
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p> <p>① 국립묘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안장한다. 다만, 유족이 국립묘지 안장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국립서울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및 국립연천현충원 가. ~ 하. (생략)</p> <p><u><신설></u></p> <p>2. · 3. (생략)</p> <p>4. 국립호국원 가. ~ 라. (생략)</p> <p><u><신설></u></p> | <p>제5조(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p> <p>① ----- ----- ----- --. ----- ----- -----.</p> <p>1. ----- -----</p> <p>가. ~ 하. (현행과 같음)</p> <p>거. <u>군무원으로 2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 정년 퇴직한 사람에 한정한다).</u>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p> <p>2. · 3. (현행과 같음)</p> <p>4.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마. <u>군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u> 이 경우 재직기</p> |

5. (생략)

② ~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

1. ~ 4. (생략)

4의2. 제1항제4호라목의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징계처분 또는 비위사실 등으로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榮譽性)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

5. (생략)

⑥·⑦ (생략)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5조제1항제1호차목, 타목 및 파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에 해당하

간의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를 준용한다.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1항제1호거목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항 제4호라목 및 마목의-----

5.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10조(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

-----.

1. -----타목,
파목 및 거목에-----
-----제4호라목 및 마목에

| | |
|-------------------------------|-------------------------|
| <p>는 사람의 안장 대상 해당 여 부</p> | <p>----- --</p> |
| <p>2. ~ 6. (생략)</p> | <p>2. ~ 6. (현행과 같음)</p> |
| <p>② ~ ⑥ (생략)</p> | <p>② ~ ⑥ (현행과 같음)</p> |